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1999. 10. 01 개정 2002. 03. 01 개정 2009. 03. 01
개정 2001. 10. 01 개정 2007. 09. 01 개정 2017. 12. 04

제1조(목적) 본교 입학전형(편입학 포함)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수원여자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9.1.>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교무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4.>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입학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7.9.1., 2009.3.1.>

제3조(임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주관하며 입학 전형에 관한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리한다. <개정 2007.9.1.>

제5조(회의) ① 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한다.

②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는 입학담당부서가 맡는다. <개정 2007.9.1.>

제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3.1.>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